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4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정훈 의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¹⁾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²⁾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³⁾,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소에서 CCTV 설치는 제한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현행법 상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법 률	조 문	목 적	설 치장 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학교시설 (학교담장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⁵⁾	제20조의7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외
아동복지법 ⁶⁾	제32조	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부지 외곽경계선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학교체육 진흥법 ⁷⁾	제7조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실내외 훈련장, 학생선수기숙사,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⁸⁾	제8조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교육부 자료(2025. 2. 11.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6만 대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실내 설치 건수는 18.5만 대로, 실내 설치 건수 중 복도 및 계단은 11.9만 대, 현관 등 로비는 2.1만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은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가 설치되어 있음⁹⁾.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발생¹⁰⁾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강화 필요성 및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귀가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9)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10페이지

10) 2025.2.10.(월) 16:30~017:30경,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참여 학생 학교 내 피살사건 발생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¹¹⁾.

현행법 상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토록 하고 있어 학교별로 CCTV 설치 사례가 상이하고, 학생 이동이 많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늘봄학교) 확대¹²⁾에 따라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 CCTV 설치 장소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1)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2025.2.18.) 등

12)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시행방안 요약> 발췌

(도입배경) 학부모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체계 마련 필요

(늘봄학교도입) 기존의 초등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외 종합교육운영체제인 늘봄학교도입

(경과) 2024년에는 돌봄공백에 취약한 초1을 우선대상으로 전면도입, 2025년 초1~2, 2026년초등 전학년으로 지원대상 연차적 확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